

의안번호	제 179 호
의 결 연 월 일	2019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황 규 철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9년 4월 9일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황규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9
----------	-----

발의연월일: 2019년 4월 9일

발 의 자: 황규철,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박성원, 이의영,
임기중의원

1. 제안이유

충청북도 내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생존수영교육과정 운영, 수영시설 확보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변경)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나. 기본계획 수립 사항 내용 추가(안 제4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라. 용어변경(안 제7조)

- (현행) 간이수영시설 → (변경) 이동식수영장

마.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

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서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 생활지도담당

라. 기 타

1) 입법예고: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9-26호

2019. 3. 21. ~ 2019. 4. 5.(특이의견 없음)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를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함양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 위기상황 시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2. “생존수영 교육과정”이란 생존수영교육 수업 시수, 수업 시수별 교육내용 및 지도방법 등을 체계화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

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존수영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
2. 생존수영교육과정
3.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시설 확보
4. 수영장 시설 안전관리 대책
5.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 및 지도자 확보·연수
6.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충청북도 내 수영장 시설 실태 및 각급 학교의 생존수영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생존수영교육 활성화) ①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 생존수영교육 수업시수 및 교육내용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대상자 모두가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존수영교육시설 확보)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또는 이동식수영장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 연수)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 및 지도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 및 지도자에게 전문성과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안전조치의 의무) 교육감 및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 교육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연수 및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등에 관한 사무를 생존수영 관련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시설 확보와 예산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제15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역사회와 협력)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진흥” 을 “지원” 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기존 총사업비 : 3,613,400천원
 - 교육 운영비 : 3,613,4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없음